캔사스중앙교회 지도자 지침서

Guidelines for Leading CKGMC

2026

- 표시 안내:
 (추가)=새 조항,
 (삭제)=폐기할 기존 조항,
 (수정)=GMC 및 교회 상황에 맞게 변경한 조항

I. **(수정)** 개체교회의 사명: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

II. **(삭제)** ~~2020 Kansas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표어: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The Church on Christ Alone (C.O.C.A)~~

III. **(수정)**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의 구조

A. 총회

B. **(삭제)** ~~지역총회~~

C. 연회

D. **(수정)** 구역회 / 교회총회

E. 교회임원회

IV. 각 지도자와 행정 부서의 역할

A. 담임목사

1. 영적 지도자로서의 담임목사
2.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
3. 평신도를 지도하고 훈련하는 사역
4. 지도력을 발휘하며 비전을 보여주는 사역
5. 온전한 교회를 유지하려는 수호자로서의 사역
6. **(수정)** 글로벌감리교회의 연대적 사역과 한미연회에 참여하는 사역
7. 지역사회를 위하여 하는 사역

B. **(수정)** 평신도 대표 / 평신도 연회 대의원

1. 책임

a) **(수정)** 성도들의 의견과 관심을 폭넓게 듣고 담임목사와 교회 지도부에 전달

b) 평신도들의 선교와 사역을 촉진

c) 담임목사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 수시로 상의

(추가) • 평신도 대표와 평신도 연회 대의원, 교회임원회 의장은 같은 사람이 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겸임 시에도 역할을 구분한다.

(추가) • 평신도 대표는 성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평신도 사역을 촉진하는 일을 주된 책임으로 한다.

d) **(수정)** 교회임원회, 재정위원회,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의 당연직이 됨

e) **(삭제)** ~~10 월에 있는 평신도 주일을 주관~~

f) **(수정)** 평신도 연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연회에 참석하여 개체교회를 대표하고, 연회 후 주요 결정 사항을 교회에 보고

2. **(수정)**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3 년 봉사 후에는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C. 교회 임원회

1. **(추가)** 의장의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3 년 봉사 후에는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2. 책임

a) **(수정)**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교회의 연간 사역을 계획·조정·평가

b) **(삭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통할~~

(추가) • 교회임원회는 각 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며 통할한다.

(추가) • 그러나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공천 명단과 분별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c) **(수정)** 예배, 제자양육, 교육, 선교·구제, 미디어 등 교회의 주요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협의

d)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재정적인 지원방안 검토

e) 개체교회와 관계된 모든 법적인 절차 검토

f) **(수정)** 담임목사와 유급사역자의 사례비 및 수당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교회총회에 제출

g) **(수정)** 총회와 연회가 정한 연대사역헌금 및 교회가 결의한 선교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성실히 납부하도록 노력

(추가) • 각 부서와 위원회는 1 년 사역을 마칠 때 한 해 사역을 결산하며 다음 해 과제와 필요한 지도력을 정리하여 교회임원회에서 나누며, 이를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에 전달하여 이를 참고한다.

(삭제) ~~•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의 기본 행정 조직은 교회임원회이며 다른 그룹이 임원회 기능을 하도록 조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UMC 각주~~

3. 조직

a) 담임목사

b) 교회의 유급사역자(투표권 없음)

c) 평신도대표/연회원

(추가) • 교회임원회 의장

d) 목회협력위원장

e) 재단이사회장

f) 재정위원장

g) 재무서기와 회계

h) **(수정)** 사역부장들(제자양육, 예배, 음악, 교육, 선교 및 구제, 미디어 등)

i) **(수정)** 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 회장

(추가)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

(추가) • 담임목사가 위원장을 맡고 지도자를 발굴·훈련·배치·평가하며, 구성과 운영은 GMC 장정 ¶444 를 따른다.

(추가) • 교회임원회와 사역 현황 및 필요한 지도력에 관해 협력하되, 공천에 관한 분별과 추천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추가) • 임기 중 결원이 생기거나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 GMC 장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충한다.

(추가) • 교회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 년이며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하다. 임기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3 년 봉사 후 1 년의 휴식 뒤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

D. **(수정)** 목회협력위원회

1. 책임

a) 파송을 위하여 감리사 또는 감독과 상의

b) 사역과 포지션의 성격과 기능을 목사와 회중에게 설명

c) 개체교회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유급사역자가 필요할 경우 목회협력위원회는 교회임원회에 그 직책에 대한 승인을 요구해야 함. 임원회가 새로운 유급직책을 승인하면 재정부에 경비를 요청. 재정부는 교회임원회에 유급사역자에 필요한 총액을 요청. 교회임원회가 총액을 승인하면 유급사역자를 선정하여 초청할 수 있음.

d)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부목사와 유급사역자의 직책 설명서를 작성.

e) 목사 및 유급직원의 연봉, 교통비, 휴가, 건강보험, 연금, 주택, 기타 사역자의 활동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 의논하여 관계된 부서에 보고 (사례비는 재정위원회, 주택은 재단이사회).

f) 담임목사나 유급사역자를 위한 연장교육을 위한 재정을 확보

g) 성직을 지망하는 이들을 발굴하여 구역회에 천거

2. 선출과 임기: 5–9 명의 평신도로 구성하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 년조로 매년 선출한다. 유급사역자의 직계 가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모임: 1 년에 4 번 모임이 이상적. 담임목사, 감리사의 요청시 언제나 모일 수 있음. 위원회의 모임은 반드시 담임목사나 감리사에게 장소와 시간 목적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함..

E. **(수정)** 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장의 책임

a) 교회 전체 재정(재정 방향, 모금, 관리, 지출 등)을 책임

b) 매년 교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회임원회에 제출

c) **(삭제)** ~~재정위원장이 매주 헌금을 계산하여 은행에 예금~~

(추가) • 헌금 계수는 최소 2 명이 함께 수행하고 계수표에 공동 서명하며, 지정된 담당자가 가능한 신속히 전액 입금

d) 프로그램 예산 관리

e) 재정을 위한 홍보 활동

f) 재정보고

g) 헌금과 청지기 생활을 신실하게 하도록 권장

h) 자선 활동 권장

i) **(수정)** 헌금 계수, 입금, 기록, 지출 승인, 지급, 은행 조정이 분리되도록 개체교회 자금관리 정책을 수립

j) 연례 감사 받은 것을 구역회에 보고

2. 재정위원회 조직

a) 재정위원장

b) 목사

c) 평신도 대표/연회원

d) **(수정)** 목회협력위원장

e) 재단이사회장

f) 재정서기/회계

g) 교회 사무장

h) 기타 구역회가 위원으로 선출한 사람

3. 재정서기의 역할

a) **(수정)** 헌금 계수 자료를 받아 수입을 기록하고 입금 내역과 대조하되 지출·지급 업무는 맡지 않음

b) 기록 (모든 재정 서류는 적어도 5 년 이상 보관)

(추가) • 헌금 계수자, 입금 담당자, 재정서기, 지출 승인자, 회계/재무 담당자와 은행 조정 담당자는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다.

c) 헌금봉투 관리

4. **(수정)** 회계/재정 담당자의 역할
 a) **(수정)** 교회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보고
 b) **(수정)** 승인된 예산과 증빙에 따라 지출하고 지급 기록을 보관
 c) **(수정)** 연대사역헌금과 교단 부담금의 납부 절차를 재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송금
 d) 담임목사에게 회계 보고
 e) 각 부서의 회계 교육 (1 년에 적어도 2 회 교육. 지출결의서 작성법과 영수증 첨부법 교육)
5. **(수정)**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이후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F. 재단이사회
1. **(추가)** 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이후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2. 책임
 a) 개체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재산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책임
 b)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교회건물 사용을 위한 정책을 세움
 c) 교회와 관계되는 보험을 들기 위한 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신청
 d)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월부, 보험료, 유지비, 개수비, 수리비, 세금 등을 위한 예산안 작성.
3. 회원 선출과 임기: 3 년조로 1 년에 1/3 씩 교체.

G. 예배위원회 위원장
1. 책임
 a) 예배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와 상의
 b) 교회력과 부흥회를 점검하고 예배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 (강단 장식 등)
 c) 안내위원와 헌금위원의 책임을 알려줌
 d)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회임원회에 아이디어 제안
 e) 예배를 위한 기도와 작은 일에까지 세심한 주의와 점검과 준비
2. **(수정)**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이후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H. 음악위원회 위원장
1. 책임

a) 헤세드 찬양팀과 주찬양 성가대, 유스 오케스트라를 총괄하며 멤버들을 수시로 모집
b) 팀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 수렴과 반영
c) 지휘자, 반주자 충원시 목회협력위원장, 담임목사와 논의하여 결정
d) 성도들이 찬양에 관심을 갖도록 프로그램이나 분위기 조성
e)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수시로 대화하며 연간 계획 논의 및 추진
f) 교회임원회 참여하여 각 찬양팀과 성가대의 의견 제안

2. **(수정)**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이후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추가) 미디어위원장 (2026 년 12 월 교회총회 통과 이후)

(추가) • 예배 방송, 온라인 예배,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음향·영상 장비를 관리한다.

(추가) • 개인정보, 초상권, 저작권과 계정 보안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봉사자를 훈련한다.

(추가) •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I. **(수정)** 선교 및 구제위원회 위원장 (2026 년 12 월 교회총회 통과 이후 명칭 적용)

1. 책임
a) **(수정)** 1 년 동안 선교와 구제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교·구제 프로젝트를 기도와 재정으로 지원할 기회를 마련
b) **(수정)** 선교와 구제에 관련된 예산안을 재정위원회와 교회임원회에 제출
c) **(수정)** 지역사회와 국내외의 필요를 조사하고 선교 및 구제 사역을 통해 응답할 길을 모색
d) 선교를 통해 개체교회와 세계를 연결
e) 국내외에서 봉사할 선교사 지망생 발굴
f) 단기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줌
g) **(수정)** 교단과 연회가 정한 선교·구제헌금 및 교회가 결의한 특별 선교·구제 사업을 지원

2. **(삭제)** ~~연합감리교회의 초점~~
a) **(삭제)** ~~국내외 지도자 개발~~
b) **(삭제)** ~~개척교회 개발과 기존교회 활성화~~
c) **(삭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역~~
d) **(삭제)** ~~세계 질병 퇴치 운동~~

3. **(수정)**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이후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J. 교육위원회 위원장

1. 책임
 a)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함
 b) 교육부 회의 인도
 c) 교육 행정과 프로그램을 책임짐
 d) 교사를 발굴
 e) 교육부 예산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리
 f) VBS 책임자
 g) 어린이/청소년을 가진 부모와 가르치는 교사와 밀접하게 접촉
 h)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장
 i) 담임목사, 교육목사, 다른 임원들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관하여 밀접하게 상의.
 j)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주일학생들이 예배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k)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에 대한 평가
2. **(수정)**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이후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K. 제자양육위원장

1. 책임
 a) 개체교회의 모든 제자훈련 과정의 행정을 총괄(일대일양육, 제자 성경통독, 예수님의 사람)
 b) 성도들이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
 c)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도록 돕기
 d) 새가족을 환영해 주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e) 새가족을 바나바와 연결시켜 양육, 수료하도록 돕기
 f) 처음 방문한 새가족의 방문 카드를 보관하고 2 차, 3 차 방문할수 있도록 연락
 g) 1 년에 2, 3 차례 새가족 환영회 개최
 h) 성도들이 영적 양분을 먹을 수 있도록 도서관 관리
2. **(수정)** 선출과 임기: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 또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 년,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이후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

L. 남선교회/여선교회장

1. 선교회의 사명: 모든 회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 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생활을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사명이 있다.
2. 책임
 a) 선교회 회의를 주재
 b) 선교회 회원이 개체교회 행사나 지방회와 연회의 활동 및 훈련의 기회에 참여하도록 권장
 c) 선교회 회원이 개체교회에서 책임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
 d) 담임목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e) **(수정)** 연회 및 교단의 관련 평신도 사역과 필요에 따라 협력
3. 조직
 a) 회장
 b) 부회장
 c) 서기
 d) 회계
 e) **(수정) 이외 각 선교회가 정한 부서와 책임자**
4. 남선교회가 교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a) 남성들에게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b) 봉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c) 새가족들을 찾아내고 교육
 d) 전도와 재정확보의 기회를 제공
 e) 남성들이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함
 f) 교인들 간에 동료의식을 북돋아 줌
 g) 남성들이 교회에 머물고, 또한 세상에서 섬기게 함

5. **(수정)** 선출과 임기: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교회임원회 구성원으로 봉사할 경우 임기는 1 년이고 같은 직책에서 연속 3 년까지 가능. 이후 1 년의 휴식 뒤 다시 맡을 수 있음.